



교육감 규정

번호: A-755

제목: 자살 예방/중재

항목: 학생

발행: 2024년 7월 25일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은 2011년 8월 18일 자 A-755를 대체합니다.

본 규정 전반에 걸쳐 명확한 내용 전달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순서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본 규정 끝에 첨부되어 있는 문서 및 자료는 해당 자료에 대한 링크로 대체되었습니다.

본 규정의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섹션 I:

- 자살 예방에 대한 배경 정보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I.A.)
- 자살 예방의 목적이 자살 경고 징후 및 자살관련 행동에 기여하는 요소에 대해 학교 커뮤니티를 교육시키는 것이라는 점이 추가되었습니다. (I.B.)
- 이 규정은 학교가 자살 충동, 자살 시도 또는 관련 위기에 대한 경고 징후와 적절한 대응을 이해할 수 있는 지침과 리소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I.C.)
- 학교는 재학 중이거나 복귀하는 학생의 조건으로 정신건강 확인서를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 학생의 복귀에 추가적인 조건을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I.D.)

섹션 II:

- 정의 섹션이 추가되어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섹션 III:

- 학교 위기 팀 멤버들이 반드시 학교에 풀타임 근무해야 하는 요건 추가를 포함하여 누가 학교 위기 팀에서 반드시 활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III.B.)
- 각 학교장이 반드시 자살 예방 담당자(Suicide Prevention Liaison: SPL)를 지명해야 하며 SPL의 역할이 정의되었습니다. (III.D.)
- 학교 위기 팀의 책임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III.E.)
- 학교 위기 팀 회의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III.F.)

섹션 IV:

- 학교의 위기 중재 계획의 상세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IV.A-B.)
- 위기 중재 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은 [교육감 규정 A-411](#)을 교차 참조하십시오. (IV.D.)

- 위기 중재 계획의 자살 예방/중재 섹션에 무엇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IV.E.)

섹션 V:

- 본 규정의 연례 교육 시점 및 요건을 명확히 합니다. (V.A.1.)
- SPL 이 연례 자살 예방 담당자 연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V.A.2.)
- 학교 위기 팀 멤버의 필수 연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V.A.3-4.)
- 학부모, 가정 및 학교 커뮤니티에 제공될 리소스가 설명되었습니다. (V.B.1-3.)
-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연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신 건강 교육을 포함한 보건 교육을 필수로 제공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V.B.4.)

섹션 VI:

- 학교 교직원이 학생의 자살 위험에 대해 알고 있거나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취해야 하는 조치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VI.C.)
- 학교 교직원이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살 시도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반드시 취해야 하는 조치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VI.D.)

섹션 VII:

- 학교 커뮤니티 내 자살 또는 영향을 주는 자살 이후 취해야 하는 사후 중재에 대한 세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섹션 VIII:

- 학교장/대리인이 학교 내에서 일어났거나 학교 커뮤니티에 영향을 주는 자살 또는 자살시도 발생시 비상 정보 센터(Emergency Information Center: EIC)에 연락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VIII.A.1.)
- 온라인 사건 발생 리포트를 작성하는 요건을 명확히 합니다(VIII.B.)

섹션 IX:

- 기술적 지원 문의처에 관한 연락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섹션 X:

- 문의 관련 연락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번호: A-755

제목: 자살 예방/중재

항목: 학생

발행: 2024년 7월 25일

요약

본 규정은 2011년 8월 18일자 규정 A-755를 대체합니다. 본 규정은 잠재적, 실질적인 자살행위에 대처하는 학교의 역할을 강조하며, 각 학교의 학교 위기 중재 계획(School Crisis Intervention Plan)의 수립 지침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교직원은 학생들이 일말의 잠재적 자살 시도 기미가 보이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이 이 사실을 비밀에 부쳐줄 것을 요청했다라도 즉시 학교장 또는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직 훈련 받은 정신건강 전문 담당자(가이던스 카운슬러,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및 정신과 전문의)만이 적절한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학교 위기 팀은 반드시 자살 예방 담당자(Suicide Prevention Liaison: SPL)로 지정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I. 서론

- A. 자살 생각에 힘들어하는 학생들 중에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타인에게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에 대한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덜 직접적이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살에 대해 생각하는 학생들은 종종 단서를 제공하고 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곧 자살 행동을 할 위험이 있음을 나타내는 경고 신호를 보여줍니다. 경고 신호가 반드시 학생이 자살을 시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항상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학교 교직원(교육직 및 비교육직)이 이러한 경고 신호와 접근 방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B. 자살 예방 교육의 목적은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교육직/비교육직 직원, 학부모, 학생 등)에게 자살의 경고 신호와 자살 행동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알려주고 이들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적절한 예방/중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자살의 경고신호나 징후는 기타 요인 및 각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리소스는 교육청 [웹사이트 위기 지원](#)에서 제공됩니다.
- C. 이 규정은 학교가 자살 생각, 자살 시도 또는 관련 위기에 대한 경고 징후와 적절한 대응을 이해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 D. 학교는 학생이 학교에 복귀하거나 다닐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정신건강 진단서를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II. 정의

본 규정과 자살 예방 및 중재 관련 논의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됩니다:

- A. 위험: 자살 위험은 다양한 수준의 위험을 가진 연속으로 존재합니다. 위험 수준별로 학교와 학군에서 다른 수준의 대응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 B. 학부모: [교육감 규정 A-101](#)에 정의된 의미를 가지지만 예외적으로 본 규정의 목적의 경우 학생이 18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학부모는 계속 연락을 받아야 하며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학부모"란 용어는, 학생의 부모(들), 또는 학생과 부모 관계 또는 법적 보호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는 기관, 혹은 그 밖에 학부모가 부모역할을 대신하도록 지명한 사람(*loco parentis*)을 의미합니다.
- C. 위험 평가: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의 평가를 의미합니다. 위험 평가는 자살 예방 담당자, 학교 위기 팀의 다른 멤버, 학교 정신 건강 클리닉의 훈련을 받은 담당자, 커뮤니티 기관의 훈련을 받은 담당자 또는 지정된 학교 교직원(예를 들어 학교 심리상담사, 학교 사회 복지사, 학교 카운슬러 또는 어떤 경우 훈련을 받은 학교 행정담당자)이 실시합니다. 이 평가는 생의 자살 의도, 이전 자살 시도 이력, 자살 계획의 존재 및 그 치사율과 가용성 수준, 지원 시스템의 존재, 절망감 및 무력감 수준, 정신 상태 및 기타 관련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 D. 자살 생각: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자해 행동에 대해 생각, 고려 및 계획을 의미합니다. 계획이나 생을 마감하려는 의도가 없이 죽고 싶은 것도 자살생각으로 간주되어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 E. 자살 행동: 자살 시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의도를 가지고 자해, 자살 계획이나 전략 수립, 자살 계획을 위한 수단 수집, 그 밖에 생을 마감하기 위한 의도를 나타내는 명백한 행동이나 생각을 의미합니다.
- F. 자살 시도: 최소한 어느 정도 죽음에 대한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 자해 행동을 의미합니다.
- G. 자살: 이 행동으로 인해 죽겠다는 의도가 있는 자기 주도적인 자해 행동으로 인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III. 학교 위기 팀

- A.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해 신속하고 통합된 조치, 명확한 의사소통 라인 및 당사자의 새로운 감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합니다.
- B. 모든 학교 학교장은 반드시 학교 위기 중재 팀을 설립해야 합니다("위기 팀"). 위기 팀은 다분야 팀입니다. 팀 구성원은 반드시 학교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해야 하며, 학교에 이러한 직책에 담당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최소한 학교 행정직원, 학교 카운슬러(들) 및/또는 사회 복지사(들), 교사(들), 약물 남용 예방 및 중재 스페셜리스트(들)(Substance Abuse Preventions and Intervention Specialist: SAPIS), 학교 간호사(들) 및/또는 학교 기반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School Based Mental Health Providers: SBMHP)를 포함해야 합니다.
- C. 위기 팀은 반드시 위기 팀 리더와 자살 예방 담당자(SPL), 그리고 종합 계획에 나열된 기타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위기 팀 리더 이외의 여러 직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기 팀 구성원이 학교를 떠나거나 책임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대체 구성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 D. 학교 카운슬러, 학교 사회 복지사 또는 가이던스 카운슬러를 SPL 로 지정하도록 추천합니다. 학교에 이런 직위의 교직원이 없다면 SPL 로 지정된 사람은 반드시 학교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직원이어야 합니다. SPL 은 자살 예방 및 중재의 연락 및 리소스 담당자로 활동합니다. SPL 은 반드시 자살 위험 평가 및 자살 예방/중재 프로토콜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장기간 SHP 이 업무를 못하게 되었을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SHP 이 복직할 때까지 다른 사람을 임시 담당자로 임명해야 합니다. SPL 직위가 공석이 경우 반드시 새로운 SPL 을 신속히 임명해야 합니다.
- E. 위기 팀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 도중 및 이후에 학생, 직원 및 학교 커뮤니티의 정서적 요구 사항 평가 및 해결하기, 해당 위기에 영향 받은 당사자들을 위한 지원 및 중재하기, 완화 지원 제공하기, 학습 환경 복원 촉진하기, 학생, 직원, 학부모 지원을 위한 학교 및 커뮤니티 리소스 확인하기 (예: 병원, 이동 위기 팀, 정신 건강 기관, 학교 기반 정신건강 클리닉, 위기 완화 훈련을 받은 관계자, 긴급/당일 정신 건강 평가 제공이 가능한 시설), 예방 전략 개발 및 시행하기, 전문성 개발 촉진 및 제공하기.
- F. 학교 위기 팀은 준비 상황을 평가하고 절차, 자원 및 훈련을 검토하며, 위기에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꾸준한 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해야 하기 위해 매월 1 회 이상 및 필요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의의 주제와 참석자는 반드시 파일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IV. 위기 중재 계획

A. 각 학교의 위기 팀은 반드시 종합 학교 및 청소년 발달 계획의 일부로 위기 중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기 중재 계획은 다음 설명한 섹션을 포함해 여러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위기 중재 계획은 반드시 매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 되어야 합니다. 계획은 매년 반드시 10 월 31 일까지 완성되어 모든 교육직 및 비교육직 교직원과 공유해야 합니다.

B. 학교 위기 계획의 필수 요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교육감 규정 A-411](#) 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각 위기 중재 계획에는 반드시 위기/외상 사건에 대응하는 절차,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위기를 알리는 알림 절차, 위기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개인들의 새로운 정서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전문적인 개발 계획, 지역 사회 리소스 및 파트너십이 있어야 합니다.

C. 또한 각 위기 중재 계획은 반드시 자살 관련 위험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게 중재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적 실천방안을 적시한 학교 위기 중재 계획에 대한 섹션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계획의 필수 요건입니다:

1. 학생 및 학교 커뮤니티에게 제공 가능한 교내 및 커뮤니티 리소스 파악(예, 정신건강 클리닉, 이동 위기 팀, 응급/당일 정신건강 평가 제공 가능한 시설 등).
2. 자살 예방 및 중재 관련 전문 개발에 대한 계획 파악.
3. 자살 예방 교육/중재 및 후속중재(후속조치), 및 후속 방안과 활동.
4. 계획 실천에 참여할 각 교직원의 이름과 역할, 의무 포함.

V. 전문 개발 및 리소스

A. 교직원 전문 개발

1. 교육청은 기본적인 자살 인식, 학교의 자살 예방 계획, 자살 위험 요소, 위험 행동, 식별 가능한 지표, 의뢰 절차, 후속 전략, 교직원이 잠재적 자살 충동을 가진 학생의 특별한 필요에 민감하게 하기를 포함하여 학교 교직원(교육직 및 비교육직)에게 이 규정에 대한 연례 연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수는 반드시 매 학년도 10 월 31 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타 위기 관련 연수는 [교육감 규정 A-411](#) 을 참고하십시오. 자살 인식에 대한 추가 자료는 교육청의 [위기 지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SPL 은 반드시 위험 평가, 위기 중재 및 교육청의 알림 및 보고 프로토콜에 대한 연례 자살 예방 담당자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SPL 이 학년도 중 변경되면 새로운 SPL 이 반드시 임명되어야 하며 30 일 이내에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3. 위기 팀 멤버는 반드시 자살 위험 스크리닝 평가, 자살 위험에 대한 개인 안전 계획, 학부모 알림 및 자살 위험 관련 학교 복귀 프로토콜을 포함한 중재 절차에 대한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 카운슬러, 사회 복지사 및 학교 심리상담사 또한 이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4. 위기 팀 멤버는 반드시 웰빙 증진, 자살 인식, 예방 및 사후 관리, 외상성 사망, 상실 및 사별에 대한 학교의 대응, 그리고 행동적 위기 완화를 포함한 위기 관련 주제에 대해 지속적인 전문적인 개발을 받아야 합니다. 위기 팀 멤버가 받아야 할 추가 연수는 [교육감 규정 A-411](#) 을 참고하십시오.
- B. 자살 예방 포스터
1. 학교는 반드시 "자살 예방"에 관한 포스터를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들의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해당 포스터에는 반드시 SPL 담당자(들)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교들은 가능한 학년도 초 이른 시기에 이 정보를 게시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C. 추가 교육 및 리소스
1. 교육청은 웹사이트에 청소년 자살, 경고 징후, 위험에 처한 아이에 대처하는 방법, 학교와 커뮤니티에서 추가 도움을 이용하는 법에 대한 자료를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2. SPL 은 반드시 위기 팀 멤버 명단과 중재 절차 등이 잘 보이는 곳에 비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학생 교육: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연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신 건강 교육을 포함한 보건 교육을 필수로 제공해야 합니다.

VI. 중재 절차

- A. 모든 교직원은 반드시 학생들이 일말의 자살 생각, 자살 시도 또는 잠재적 자살 기도의 기미가 보이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이 이 사실을 비밀에 부쳐줄 것을 요청했다라도 즉시 학교장 또는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B. 학교는 학생이 학교에 복귀하거나 다닐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정신건강 진단서를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C. 자살 생각

1. 학교 교직원이 자살 위험에 처한 학생에 대해 알고 있거나 알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 a) 학생은 반드시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독 하에 있어야 합니다.
 - b) 교직원은 즉시 학교장/대리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c)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SPL 이나 자살 예방 훈련을 받은 다른 위기 팀 멤버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그 후 즉시 학부모에게 학생이 자살 위험으로 판명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학생이 학교장/대리인에게 통지와 관련하여 안전상의 염려를 제기하였을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시니어 현장 자문과 상의하여 학생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및 안전상의 염려를 고려하면서 어떻게 부모에게 이 내용을 통보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 d) SPL/대리인은 반드시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중재:
 - a) 학생은 반드시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적절한 지원과 중재를 즉시 받아야 합니다.
 - b) 학생이 학교 복귀일로부터 수업일 기준 1 일 이내에 SPL 은 위기 팀의 관련 멤버, 학교 교직원 및 학생과 함께 (적절한 경우) 학생을 위한 지원 및 안전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 및 안전 계획은 위기 평가의 정보와 기타 다른 요소를 사용하여 개발되어야 합니다. 학생이 결석한 경우 계획의 작성 및/또는 완성은 학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계획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i. 학생 및 학생 가족과 연락 유지.
 - ii. 학생이 자살 시도 수단에 대한 접근을 나타낸 경우 적절한 예방 조치.
 - iii. SBMHP, 병원 및 정신보건 기관과의 연락.
 - iv. 학생이 학교 및 기타 스트레스 요소에 적응하고 극복하도록 도움.
 - v. 필요한 경우 학교 프로그램의 조절.
 - vi. 교내 서비스와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도움을 통합.
 - c) 학부모에게 계획의 사본과 정신 건강 후속 조치 및 24 시간 위기 리소스에 대한 추천을 제공해야 합니다.
 - d) 학생이 자살 시도 수단에 대한 접근에 대해 나타낸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부모에게 알려 차후 예방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또한 해당 학부모에게는 "자살수단 제한조치"에 관한 카운슬링을 실시하여 학생이 자살시도를 할 수 있는 방법(예, 위험한 무기 또는 약물 등)으로의 접근을 제한하도록 합니다.

D. 자살 시도

1. 다음 절차는 교직원이 학교 경내에서 진행 중인 시도에 대해 알게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교직원이 최근 발생한 학교 밖 시도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에는 섹션 3의 해당 절차를 참고하십시오. 학생의 즉각적인 신체적 웰빙, 정신 건강 및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a) 즉각적인 중재 조치. 진행 중인 자살 시도를 알게 된 교직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릅니다:

- i. 학생은 반드시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독 하에 있어야 합니다. 학생은 절대 동행 없이 학교를 떠날 수 없습니다.
- ii. 교직원은 즉시 학교장/대리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a) 학교장/대리인은 학부모에게 (전화 또는 전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문자, 이메일 또는 음성메시지로)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학교 또는 병원으로 오시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감 규정 A-663](#)에서 학부모와 소통 시 통역 서비스에 대해 참고하십시오. 학부모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학생의 비상 연락 카드에 지정된 비상 연락처에게 이를 알리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학생이 학교장/대리인에게 학부모에게 어떤 정보를 공유할지에 대해 안전상의 염려를 제기하였을 경우(예를 들어 자살 시도나 생각의 원인),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시니어 현장 자문과 상의하여 학생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및 안전상의 염려를 고려하면서 어떻게 부모에게 이 내용을 통보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 iii. 위기 팀 멤버, 특히 SPL 을 현장으로 불러야 합니다.
- iv. 학생이 다쳤다면 교직원은 반드시 학교 간호사나 기타 빌딩 내 의료 담당자에게 연락해 적절한 응급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
- v. 응급 의료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기 팀 멤버, 또는 위기 팀 멤버가 없는 경우 교직원은 반드시 [교육감 규정 A-412](#)에 명시된 응급 의료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건 관련 절차에 따라 911에 연락해야 합니다.
 - (a) 만약 학부모가 학교에 도착하거나 전화로 연락이 되어 자녀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말 것을 요청한 경우, 현장의 911 대원들은 교육청 직원과 학부모 및 기타 담당자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학부모의 요청이 뉴욕시 소방청(FDNY)의 의료 지원 거절(Refusal of

Medical Assistance)에 관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수락할 수 있는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b) 학교장/대리인이 학생의 부모 또는 비상 연락처에게 연락이 되지 못한 경우 현장의 911 대원들은

(i) 교육청 직원 및 기타 담당자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한 후 (ii) 학생에게 응급 의료 처치 및/또는 이송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학생을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경우, 학교 교직원이 반드시 학생과 동행해야 합니다. 학생과 병원까지 동행한 교직원의 근무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학생의 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교직원은 반드시 학교장/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vi. 학생에게 응급 처치 및/또는 이송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는 아래 설명된 후속 조치를 논의해야 합니다.

b) 후속 중재/후속 조치. 학교장/대리인은 학생이 자살을 시도한 후 학생 본인과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이 절차는 학교에서 시도가 이루어 졌거나 밖에서 이루어진 시도에 대해 학교가 알게 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 i. 학생은 반드시 즉각적인 적절한 지원과 중재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위기 중재팀과 협력하여 해당 학생의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중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학교 복귀를 지원해야 합니다.
- ii. 학생 및 학생 가족과 연락을 유지합니다.
- iii. SPL 또는 위기 팀 멤버는 SBMHP, 병원, 정신 보건 기관 또는 학교 밖 치료 서비스 제공처와 적절히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필요한 학교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 iv. 학생이 학교와 기타 스트레스 요인에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 v. 필요한 경우 학교 프로그램을 조절합니다.
- vi. 학교로 복귀한 후 해당 학생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적절한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 vii. 학생의 자살 시도에 연루된 교내 인원이 다수일 경우, 위기 중재팀은 학생과 직원들이 해당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viii.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잠재적 자살 행위를 보였을 경우, 교직원은 필요하다면 CSE 의뢰나 504 회의 요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504 회의 실시에 대한 내용은 [교육감 규정 A-710](#) 을
참고하십시오.

VII. 학교 커뮤니티 내 또는 영향을 주는 자살 이후 사후 중재

- A. 학교장은 반드시 수퍼인텐던트 및 EIC 에 자살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 B. 사후 중재란 학교 커뮤니티 일원의 자살 이후 후속 조치 제공을 의미합니다. 사후 중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 양육자 및 의료 제공자의 케어 대처하고, 2) 자살의 비극에 대한 오명을 벗기고 회복 과정을 지원하며, 3) 복합적인 슬픔, 전염 또는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로 인한 후속 자살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2 차 예방 역할을 수행합니다.
1. 학교는 사망에 영향을 받은 직원과 학생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2.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위기 팀과 함께 학교 커뮤니티의 안전과 웰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후속 조치에는 슬픔 지원, 정신 건강 또는 트라우마 의뢰 및/또는 자살 위험 검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학생과 교직원은 자살을 미화시키지 않고 자살 전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 a) 학교는 사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의와 감수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학교가 학교 커뮤니티에 사건에 대해 통보하기 전 학생/교직원의 가족으로부터 사망 정보 공개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비밀 유지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가족이 바라는 바를 고려해야 합니다.
 4. 학교는 리소스와 관련해서 [위기 지원](#)을 참고하고 질문은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에 문의해야 합니다.
- C. 사건 발생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학교의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은 사안을 다루도록 합니다:
1. 자살과 관련된 루머 해소.
 2. 각 교실 그룹 토론(학생들 간의 개방된 토론을 허락하고 다른 잠재적 위험이 있는 학생 식별 및 자살 모방행위 방지 목적)을 실시할 계획 수립.
 3. 학생, 교직원, 학교 커뮤니티 전체의 슬픔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 D. 학교 정신보건 담당자, 위기 팀 멤버 및/또는 커뮤니티 기관들은 학생 및 교직원들과 소규모 그룹 세션을 갖고 이러한 사건 뒤에 따르는 불안감과 슬픔을 해소할 수 있게 합니다.
- E. 학교장과 협의하여 해당 가정을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지속적인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VIII. 보고 절차

- A. 비상 정보 센터(Emergency Information Center: EIC)
1.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학교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자살 또는 자살 시도가 발생할 때 비상 정보 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위기 담당 디렉터에게도 crisissupport@schools.nyc.gov 로 연락해야 합니다.
 2. EIC 에서 사건을 접수하면, EIC 는 온라인 사건 발생 리포트(OORS 리포트)를 온라인 사건 발생 리포트 시스템(OORS)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EIC 에서는 학교에 컨트롤 번호를 부여합니다. 학교장/대리인은 수업일 기준 1 일 이내에 반드시 OORS 리포트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학교장/대리인이 EIC 근무시간 외(즉, 학교 수업일인 주중 방과 후 시간 및 학교 휴무인 주말 및 공휴일)에 EIC 에 보고해야 할 학교 관련 사건에 관하여 알게 된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이것을 즉시 보로 안전 디렉터에게 보고하고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OSYD)에서 만든 템플릿을 이용하여 EIC 에 사건 관련 이메일을 전송합니다.
- B. 온라인 사건 발생 리포트
1.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온라인 사건 발생 리포트(OORS) 자살 신고를 자살 생각, 시도 또는 실행에 대해 보고된 사건으로부터 학교 수업일 기준 1 일 이내에 작성해야 합니다. 교육청 OORS 링크는 [OORS 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10 일 이내에 OORS 후속 리포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SPL 이 OORS 리포트를 작성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IX. 기술적 지원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에서 본 규정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자살 예방 및 중재 계획, 교사 대상 연수 실시 및 자살 예방과 중재에 관한 교재 마련 등이 포함됩니다.

X. 문의

본 규정 관련 문의:

Office of School and Youth Development
 Suicid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 Room 218
 New York, NY 10007
 전화: 212-374-5501
 이메일: CrisisSupport@schools.nyc.gov